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87
------------	-------

발의연월일 : 2019. 3. 29.

발의자 : 이현승 · 함진규 · 홍철호  
박순자 · 이현재 · 곽대훈  
김기선 · 추경호 · 김석기  
이철규 · 최교일 · 엄용수  
김성원 · 김학용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제작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인증 방식에 따라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국가가 시정권고, 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야 하고,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건설기계의 전문적인 특성상 건설기계 사용자가 제작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

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객관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합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합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 ⑥ (생 략)  <u>&lt;신 설&gt;</u></p>	<p>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u>  <u>제3항에 따른 조사의 객관성</u>  <u>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u>  <u>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합심사</u>  <u>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이  <u>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u>  <u>부령으로 정한다.</u></p> <p><u>⑧ 제3항에 따른 결합 조사기</u>  <u>관은 제작결함조사 등에 대한</u>  <u>기술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u>  <u>한 경우 결합분석전문위원회를</u>  <u>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